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2. 12.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건	1	0	0	0	1	36,300	0	0
1	●●●●●소	○○○○○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1	-	-	-	1	36,300	-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심사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군 ●●●●●소에서는 2020년 7월 31일 ●●건설 주식회사 ☼☼☼과 계약하여 「○○○○○○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1] ○○○○○○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	병합처리시설 Q=50m ³ /일 (○○○○ 40, 분뇨 8, 음식물 2)	10,427	5,049	5,378	2020. 07.31	2020.08.04. ~ 2023.03.11.	●●건설 주식회사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고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차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누적 변경금액이 아래의 [표2]와 같이 18.63%이상 증가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아래 [표2]와 같이 2021. 12. 20.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2] 설계변경 내역

회차	당초	1회 변경	2회 변경
계약금액	4,052,520천원	4,294,349천원	5,049,290천원
증감 금액		241,829천원	754,941천원
누적 증감 비율		5.97%	18.63%

그 결과 터파기 시 브레이커 사용으로 터파기를 하여 암석소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공사비 36,300천 원을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조치할 사항 ㉡㉡㉡㉡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6,3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